
**국민참여형
2015년 국가안전대진단 추진계획
- 해빙기 분야 -**

2015. 1.

**국 민 안 전 처
(안전점검과)**

목 차

I . 추진배경	1
II . 2015년 해빙기 안전관리 목표 및 추진전략	3
III . 2015년 해빙기 안전관리 추진계획 개요	4
IV . 분야별 세부추진 계획	5
1. (상황관리) 선제적 상황관리체계 구축·운영	5
2. (인명보호) 인명피해 위험시설 특별관리	7
3. (전담반 운영) 재난취약시설 관리강화	8
4. (홍보강화) 대국민 홍보 집중실시	9
V . 행정사항	9
※ 불입 서류	11

I

추진배경

□ 필요성

- 경주 마우나리조트 붕괴, 세월호 침몰, 판교 환풍기 추락사고등 국가 전반의 안전 불감증에 기인한 각종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자 전 부처 차원의 국민참여형 국가안전대진단 추진계획 및 추진지침 시달(15.1.15.)
- 국가안전대진단의 근본취지에 맞춰 해빙기라는 계절적 요인에 기인한 안전사고를 사전 차단키 위해 관계부처, 지자체, 관련 민간단체 등과 유기적 협조관계를 구축, 협업을 통한 해빙기 안전관리 필요

□ 안전관리 노력에 힘입어 사고발생 감소추세이나 지속적 관리 필요

- '14년 “해빙기 안전관리 사전대비 추진지침”을 수립, 안전관리를 강도 높게 추진하여 발생건수는 감소하였으나 사망사고 발생 등 안전관리 필요성 여전

< 해빙기 안전관리 기간 중 사고현황 >

년도	총계			건설공사장			절개지·낙석			축대·옹벽			기타		
	건수	사망	부상	건수	사망	부상	건수	사망	부상	건수	사망	부상	건수	사망	부상
평균	9.5	2.1	3.4	1.9	2.0	3.0	5.1	0.1	0.1	2.0	0	0.3	0.6	0	0
'07~'13	67	15	24	13	14	21	36	1	1	14	0	2	4	0	0
2014	1	1	1	0	0	0	1	1	1	0	0	0	0	0	0

□ 해빙기 안전관리 체계에 대한 취약점 분석·개선 필요

- 시·도 및 시·군·구 소관 시설물에 한정하여 「해빙기 인명피해위험 시설」을 지정, 특별관리 추진(관리자지정, 점검·예찰)
 - 관계부처, 유관기관 소관 시설에 대한 인명피해위험시설 지정 누락
 - ▶▶ 국·공립공원, 전력공급시설 등 중앙부처 소관시설에 대해서도 「해빙기 인명피해위험 시설」로 지정 관리 강화 필요

- 최근 8년('07년~'14년)간 총 68건의 해빙기 안전사고로 41명의 사상자 발생(사망 16명, 부상 25명)
 - ('14.3.16.) 서울 북한산 국립공원 인수봉 암벽등반로 낙석발생
 - ('13.3.17.) 서울 봉천신시장 재개발공사장 흙막이벽 붕괴
 - ('12.3. 6.) 서울 성북구 노후축대붕괴로 주택파손
 - ('11.3.26.) 전북 완주군 해월리 국도26호선 절개지 낙석발생
 - ('10.2.24.) 인천 계양구 대명빌라 옹벽 붕괴

- 해빙기철에는 절개지(54%), 건설공사장(19%) 등에서 붕괴·낙석에 의한 안전사고가 다수 발생, 철저한 대비 필요

구분	계	절개지·낙석	축대·옹벽	건설공사장	기타
'07년 ~ '14년	68	37(54%)	14(21%)	13(19%)	4(6%)

□ 2015년 해빙기 기상전망('15.2월~'15.3월)

- (기온) 평년(-3~5℃)보다 다소 높겠으며 찬 대륙고기압과 이동성 고기압의 영향을 주기적으로 받아 기온 변화폭이 크겠음
- (강수량) 평년(18~61mm)과 비슷하겠으며, 기압골의 영향을 주기적으로 받겠음

목
표

국민의 생명보호와 재산피해 최소화

해빙기 위험시설 집중관리

추
진
전
략

중 점 과 제

상황관리체계
구축·운영

인명피해
최소화 대책

생활주변 위험요인
관리체계구축

체계적인
홍보활동 전개

세부추진과제

① 상황관리 총괄

- 재난대책 종합상황의 관리, 총괄 및 조정
- 상시연락체계 유지 및 재난정보 수집분석전파
- 관련기관 상호협업을 통한 신속한 상황관리

② 해빙기 인명피해위험시설 집중관리

- 인명피해 위험시설 DB구축
- 담당책임자 지정 상시관리
- 관계전문가 합동점검 실시

③ 일상생활주변 위험요인 상시모니터링

- 재난징후정보센터와 연계한 위험요인 수집
- 전담반 운영을 통한 예찰활동 강화

④ 예방중심의 홍보활동 강화

- 건설공사장 안전교육 강화
- 주민밀착형 홍보활동 지속전개

추
진
기
반

24시간재난
상황실 운영

전문가 활용한
안전점검

일반주민의
관심유도

교육·홍보

Ⅲ

2015년 해빙기 안전관리 추진계획 개요

□ 근 거

- 「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」 제25조의2(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의 재난예방조치)
- 2015년 국가안전대진단 추진계획 및 추진지침 시달(국민안전처, '15.1.15.)

□ 추진기간

- 국가안전대진단 추진기간(자율점검, 민관합동점검) : '15.2.1. ~ 3.31.
- 국가안전대진단 해빙기 추진기간 : '15.2.15. ~ 3.31.

□ 관련기관

- 중앙행정기관 : 26개 기관
- 지방자치단체 : 전 시·도 및 시·군·구
- 공공기관
 - 한국수자원공사, 한국수력원자력, 국립공원관리공단, 한국전력공사, 한국농어촌공사, 한국철도공사, 한국도로공사(민자도로관리기관 포함), 서울메트로 등 재난관리책임기관

□ 해빙기 안전관리의 특수성

- 해빙기 안전사고는 계절적 요인에 기인한 자연재난과 사회재난이 혼재된 영역으로 국가안전대진단에 근거 해빙기 도래시 특별관리 필요
- 국가안전대진단에 있어 시설물 등에 대한 집중점검은 SPOT개념이나 해빙기 안전진단은 점검 후에도 기간 동안 사고예방을 위한 지속관리가 필요한 FLOW개념

IV

분야별 세부 추진계획

1. (상황관리) 선제적 상황관리체계 구축·운영

1-1 상황근무 체계 구축

- 24시간 누수 없는 상황관리체계 가동
- 국가안전대진단 해빙기 추진기간(2.15.~3.31) 중 평일·휴일 비상근무 체계 운영
 - 평일 : 해빙기 전담부서 비상근무 실시
 - ※ 국민안전처(안전점검과), 시·도(안전총괄과), 시·군·구(재난총괄부서)
 - 휴일 : 담당국장(과장)책임하에 휴일 비상근무조 편성·운영
 - ※ 상황실(당직실)과 24시간 비상연락체계 구축, 즉시보고
- 해빙기 관련기관(중앙, 지자체) 담당부서 및 분야별 담당공무원 비상 연락체계 구축(붙임1 해빙기 비상연락망 지정현황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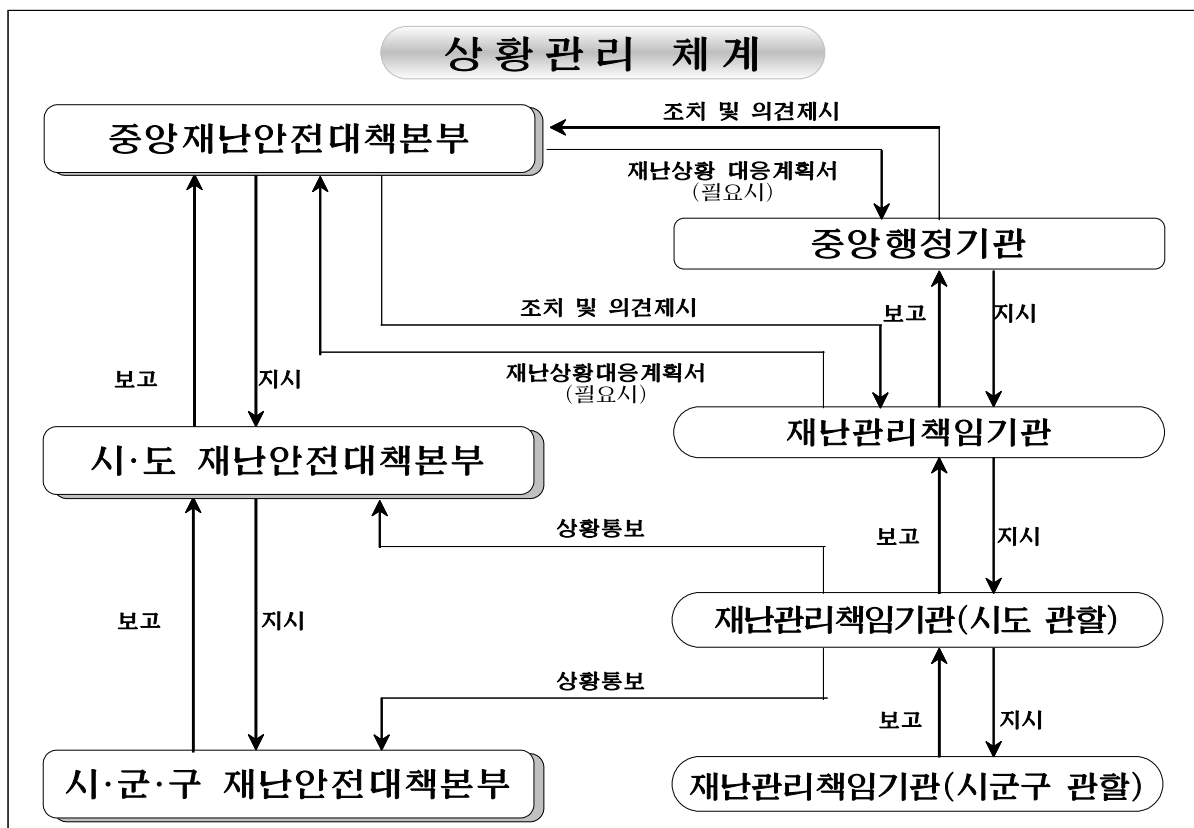
1-2 실시간 재난정보 전파

- 도로 통제 등 국민이 긴급히 알아야 할 내용위주의 재난상황 전파
- (중 앙) SNS(트위터, 미투데이 등), CBS, DMB, 교통방송, 재난방송 온라인 시스템 등을 활용
 - 교통통제, 사고정보, 재난유형별 국민행동요령 등을 실시간 전파
- (지자체) 지역 유선방송, 마을앰프, 지하철 방송, 아파트단지 방송 시설, 전광판, 행정차량 등을 활용 대국민홍보 실시

1-3 신속한 재난상황 보고체계 가동

□ 보고체계

- 시장·군수·구청장 ⇒ 시·도지사 ⇒ 국민안전처장관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보고
-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 ⇒ 시장·군수·구청장, 시·도지사,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



□ 보고단계

- (최초보고) 인명피해 등 주요 재난발생시 지체 없이 상황전파시스템, 서면(전자문서 포함), 모사전송, 전화 중 가장 빠른 방법으로 하는 보고
- (중간보고) 상황전파시스템 등을 활용, 재난수습기간 중 수시로 하는 보고
- (최종보고) 재난의 수습이 종료되거나 소멸된 후 「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」 제2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항을 종합하여 하는 보고

2. (인명보호) 인명피해 위험시설 특별관리

2-1 인명피해 최소화를 위한 총력 대응

□ 해빙기 인명피해 위험시설 지정을 위한 점검체계

○ (시·군·구) 해빙기 인명피해 위험시설 유형별 전수점검

- 기 간 : 2.13.까지(지정현황 제출 전까지 점검 완료)
- 대 상 : 축대·옹벽, 절개지, 터파기공사장, 노후주택 등
- 점검반 : 민관합동점검반(분야별 민간전문가, 기술직 공무원 : 총괄 안전총괄과)

○ (시·도) 고위험 또는 규모가 큰 시설을 대상으로 표본점검

- 기간/방법 : 2.13.까지/시·군·구 점검계획에 따라 합동점검(중복점검 지양)
- 점검반 : 민관합동점검반(분야별 민간전문가, 기술직 공무원 : 총괄 안전총괄과)

※ 시·도 및 시·군·구에서는 해빙기 인명피해 위험시설물 점검 시 시설물 유형별 점검착안사항(붙임4) 참조

○ (국민안전처) 지자체 해빙기 안전관리 이행실태 표본점검

- 기 간 : 2.15. ~ 3.31.(해빙기 기간 중 실시)
- 점검반 : 중앙합동점검단

□ 해빙기 인명피해 위험시설 특별관리

○ 금년 해빙기 안전관리를 위한 축대, 옹벽, 공사장, 노후주택 등 인명피해 위험시설 지정관리(붙임2 서식에 따라 2.13까지 현황 제출)

※ 국가안전대진단의 점검대상시설 등과 많은 부분이 중복되므로 해빙기분야는 2.13.까지 민관합동점검 완료 후 해빙기 위험시설 지정, 위험발생가능여부 상시체크

○ 위험시설별 관리자 복수지정(공무원, 지역주민) 관리전담제 실시

- 지정된 인명피해위험시설별 관리카드 작성 관리책임자(공무원)에게 배부
- 정기점검·예찰활동을 실시하여 시설별 위험징후 사전 파악
 - (평상시) 주1회 이상 정기점검 실시, 해당 지역별 위험도 사전 파악
 - (비상시) ① 호우예보 시, 호우 종료 후 각2회 수시점검 실시
 - ② 기온상승으로 지반융해 등 위험징후가 농후할 때

- 기상악화(강우, 기온상승), 토사유출, 지반침하 등 위험징후 발견시 출입통제·위험지역 주민사전 대피 등 현장 대응활동 전개

3. (전담반 운영) 재난취약시설 관리강화

3-1 | 해빙기 전담관리팀 가동

- 해빙기 안전사고 대비 총력대응체계 가동(2.15 ~ 3.31.)
 - 해빙기 안전대진단추진기간(2.15.~3.31.) 중 위험시설물 신고 접수, 현장 확인, 응급조치 등에 필요한 전담관리팀 구성·운영
 - 위험시설 발생 대비 「전문가 긴급안전점검반」 편성 등 상시 가동 체계 유지
 - 평일·휴일 상황근무 운영 등 비상근무 강화
 - 호우 예보, 호우 종료, 기온 상승 등 기상상황에 단계별 대응
 - 인명피해 위험시설 점검결과 위험요인에 대한 응급조치 및 항구 조치계획 마련 추진
 - 「국민안전신문고」, 「재난징후정보센터」 등을 통해 제보된 위험요소 모니터링 실시

3-2 | 건설공사장 특별관리

- 해빙기 안전 특별교육 및 건설현장 점검 추진
 - 민간·공공 건설현장 소장, 감리원 등 안전관계자 해빙기 주요 사고 사례, 흠막이 등 취약공종 안전 관리 특별교육 실시
 - 동결과 융해로 인해 지반 이완이 우려되는 대규모 절개지와 지하 굴착 등 취약 건설 현장에 대한 민·관 합동점검 실시

4. (홍보강화) 대국민 홍보 집중실시

- SNS, 전광판 등 다양한 매체 활용, 대국민홍보 집중실시
- 국가안전대진단 홍보와 병행 자체실정에 맞는 해빙기 홍보 종합 계획 수립 시행
- 주민눈높이에 맞는 생활밀착형 예방중심 홍보추진
 - 지자체 계획에 의한 주민대상 교육·회의시 “해빙기 동영상”을 활용한 사전예방중심 교육·홍보 실시
 - 지자체 및 유관기관에서 관리하는 각종 전광판(지하철, 철도 등)을 활용 해빙기 피해예방요령 지속 홍보
 - 특히, 해빙기 등산객 등반안전수칙, 하천·호수 등 출입제한 등 안전사고에 대비한 주민 밀착형 홍보병행

V

행정사항

《공 통 사 항》

- 해빙기 비상대응체제 구축 등 안전관리대책 추진을 위한 기관별 세부계획 수립·시행
- 기관별 해빙기 비상연락망 붙임1 서식에 따라 제출(2.13.까지)
 - ※ 시·도에서는 시·군·구 비상연락망을 포함하여 제출(시·군·구에서는 2.10.까지 시·도에 비상연락망 제출)
- 기관별 해빙기 사고 및 예방활동 추진실적 제출
 - 해빙기 주간실적은 국가안전대진단 주간보고 서식에 따라 제출하고, 해빙기 최종실적은 붙임6 서식에 따라 해빙기 기간 종료후 제출(4.3.까지)
 - ※ 시·도에서는 시·군·구 추진실적을 포함하여 제출(시·군·구에서는 3.31.까지 시·도에 해빙기 최종실적 제출)
 - 소관 시설물 해빙기 안전사고 발생시 붙임5 서식에 따라 즉시 보고

《 중앙 및 유관기관 》

○ 해빙기 안전관리 대책관련 소관사항 적극 추진

기관명	소 관 사 항	비 고
교육부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17개 시·도교육청 소관 교육시설물 안전점검 ○ 국립대학 소관 교육시설물 안전점검 ○ 안전생활화를 위한 해빙기 안전교육 실시 	
국방부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훈련장, 숙영지, 각종 군 시설물, 공사장 안전점검 ○ 군 장병 대상 해빙기 안전교육 강화 	
문화체육관광부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문화재 시설, 공공체육시설(운동장, 체육관, 빙상장, 생활체육공원 등), 골프장, 스키장 등 주요시설물 점검 ○ 보유매체를 활용한 해빙기 안전관리 홍보 ※ 전광판 광고(2월10일~3월말까지) 지원 	
농림축산식품부 (한국농어촌공사)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저수지, 양수장 등 소관시설 및 공사장에 대한 안전관리실태 점검 ○ 공사장 등 소관시설 안전관리 	
산업통상자원부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공장 등의 산업시설에 대한 해빙기 안전관리 강화 ○ 가스·통신시설 등 지하굴착 공사 안전점검 	
환경부 (국립공원관리공단)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공공하수처리시설, 매립지 안전관리 강화 ○ 붕괴위험지역(D,E등급), 급경사지 자체점검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재난안전 통제로프 및 붕괴위험지역표지판 설치 	
국토교통부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도로·철도·항만·공항분야 등 안전관리 강화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민간현장 등 해빙기 취약현장 위주 점검 ○ 공사장 관계자 안전교육 실시 	
고용노동부 (안전보건공단)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건설현장 근로자 안전관리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지하굴착공사, 교량공사 등 위험공사 안전점검 ○ 공사장 관계자 안전교육 실시 ※ 지자체 해빙기 건설공사장 안전교육 강사지원 	
관할 소방서 경찰서 관할 해양안전서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해빙기 사고발생 시 관할지자체 신속한 통보 	

《 지방자치단체 》

○ 해빙기 인명피해위험시설 지정현황 제출(2.13.까지)

※ 붙임2 서식에 따라 시·도에서는 시·군·구 지정현황을 포함하여 제출(시·군·구에서는 2.10까지 시·도에 지정현황 제출)

○ 해빙기 인명피해위험시설 관리카드(붙임3) 작성·비치 및 점검 실시(시·군·구)

【붙임 1】

해빙기 시·도 및 시·군·구 비상연락망(서식)

시·도 및 시·군·구	담당부서	과(팀)장				팀(계)장				담당자				FAX	비고
		성명	직급	전화	휴대폰	성명	직급	전화	휴대폰	성명	직급	전화	휴대폰		
시·도															
시·군·구															

【붙임 2】 ※ 서식에 맞춰 Excel로 작성

해빙기 인명피해 위험시설 지정현황(서식)

위치				시설물 유형	거주자		관리책임자(담당공무원)				관리책임자(마을대표)		
시·도	시·군·구	읍면동	지번		성명	연락처	소속	직급	성명	연락처(휴대폰)	소속	성명	연락처(휴대폰)
계													
				축대·옹벽									
				절개지									
				터파기 공사장									
				노후주택									
				기타									

【붙임 2-1】

해빙기 인명피해 위험시설 지정현황(총괄)

(개소수)

구 분	계	축대·옹벽	절개지	터파기 공사장	노후주택	기타	비고
총 계							
시·도							
시·군·구							
”							
”							
”							

【붙임 3】

인명피해 위험시설 관리카드

시 설 명	※ 산장연립		
위 치	※ 00시 00동 00번지 외 4필지		
표지판설치	1개소	설치완료일시	
위험요인 (지정사유)	※ 옹벽붕괴우려		
과 거	내용		
피해상황	원인		
대피계획인원	※ 00명	대피장소	※ 00초등학교
통제수단	※ 바리케이트, 안전선, 차량 등		
홍보수단	※ 마을앰프2개소 활용, 차량이용, 안내방송 등		



□ 분야별 담당

구 분	성 명	소 속	성 명
공 무 원	책임담당자		
지역주민	현장관리자		

점검결과

점검일자	지적사항 및 조치내용

【붙임 4】

시설물 유형별 점검착안사항

축대·옹벽·석축 등

점 검 사 항	지적사항 및 조치내용
◆ 기초지반	
◦ 세굴, 활동 발생 유무	
◦ 침하 발생 유무	
◆ 콘크리트 옹벽	
◦ 파손 및 손상, 균열 발생 여부	
◦ 누수, 층분리 및 박락, 백대 발생 여부	
◦ 철근노출 발생 여부	
◦ 배수공상태(막힘여부)	
◆ 보강토 옹벽	
◦ 파손 및 손상, 균열(블록) 발생 여부	
◦ 블록(판넬)유실 여부	
◦ 블록(판넬)이격 발생 유무	
◆ 석축	
◦ 파손 및 손상, 균열(견치돌) 발생의 여부	
◦ 견치돌 유실 여부	
◦ 견치돌 이격 발생 유무	
◆ 개비온 옹벽	
◦ 채움재 유실 여부	
◦ Wire Mesh의 파손 여부	
◆ 주변시설	
◦ 주변배수시설(배수로, 측구)의 존재 유·무	
◦ 주변배수시설의 관리상태	
◦ 상부 절토사면 존재시 낙석의 유무 및 표면 침출수 유출상태	
◦ 도로용기 발생 여부(도로시설)	
◦ 침하의 발생 여부(상부지반)	
◆ 긴급상황대비	
◦ 수방자재 가용 여부	
◦ 주민 대피시설 확보 여부	

□ 절 개 지

점 검 사 항	지적사항 및 조치내용
◆ 절토부	
◦ 인장균열 발생 여부	
◦ 침하 발생 여부	
◦ 배불음 발생 여부	
◦ 급격한 지하수 용출여부	
◦ 기존 지하수 탁도 변화여부	
◦ 지속적인 낙석발생 여부	
◆ 상부자연사면	
◦ 인장균열의 발생 여부	
◦ 침하의 발생 여부	
◦ 낙석의 발생 여부	
◆ 절개지·낙석위험지구	
◦ 절개지, 암반 등에서 결빙과 해빙의 반복으로 토사 유실 위험성 여부	
◦ 낙석방지책, 망 등 안전시설 설치 및 훼손, 방치	
◦ 위험지역 안내표지판 설치여부	
◦ 기 타	
◆ 도로	
◦ 균열의 발생 여부	
◦ 침하의 발생 여부	
◦ 도로융기 발생 여부	
◆ 보수/보강을 위한 설치된 시설물	
◦ 시설물 변형 여부	
◦ 시설물 파손 여부	
◦ 배수시설의 배수기능 유지 여부	
◆ 긴급상황대비	
◦ 수방자재 가용 여부	
◦ 우회도로 확보 여부	

□ 건설공사장

점 검 사 항	지적사항 및 조치내용
◆ 일반사항	
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◦ 원지반 상태, 시공의 적정성 여부 ◦ 지하매설물 조사여부 ◦ 굴착사면 적정구배 준수 여부(보통토사 1:1~1:1.5, 암반<풍화암 1:0.8, 연암 1:0.5, 경암 1:0.3>) ◦ 측구 및 토공작업구간 배수로 설치여부 ◦ 표면수 유입방지 조치여부 ◦ 동절기공사 시행지침 준수여부 ※ 시방서 및 지자체 규정 등 	
◆ 사면붕괴	
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◦ 부석제거 여부 ◦ 굴착 단부의 출입금지 조치여부 ◦ 산마루 측구 설치여부 ◦ 높이 5m마다 1m이상의 소단설치 여부 	
◆ 흙막이 지보공	
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◦ 조립도 작성 및 작업순서 준수여부 ◦ 수평버팀대, 좌굴방지 등의 조치 이상여부 ◦ 배면토사 충전 및 토사유출 방지조치 실시 여부 ◦ 계측관리 실시 여부 ◦ 수직 승강계단 설치 유무 ◦ 토류판 배면의 공극 유무 	
◆ 지반 침하	
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◦ 침하, 균열, 변형 여부 ◦ 차량 및 건설기계 등의 전도, 전락방지 조치 여부 ◦ 중량정비 사용전 지반 및 가설도로 지지력 확보 여부 ◦ 비계, 거푸집동바리 등 가시설물 설치상태 이상 유무 ◦ 지반침하로 인한 가시설물의 변형 여부 	
◆ 구조물공사	
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◦ 혹한기 시공된 하부구조물 콘크리트 강도 확인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슈미트해머 등 비파괴 검사 실시 ◦ 구조물 양생시 질식 및 화재조치 여부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외부감시자 및 안전장비(마스크) 비치, 착용여부 - 소화기 비치여부 ◦ 거푸집 동바리 조립상태 이상유무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구조경도 및 조립도 작성 여부 - 수평보강재 등 전용철물 사용 여부 	

□ 노후주택

점 검 사 항		지적사항 및 조치내용
◆ 건축물의 구조안전을 해치는 사항		
축대,옹벽의 안전상태	◦ 수평이동, 침하, 기울어짐 등 발생 여부	
	◦ 균열과 변형(배부름 등) 발생 여부	
	◦ 배면토의 침하, 침수, 배수구 막힘 여부	
부등침하	◦ 건축물의 기울음, 외벽 경사균열 발생 여부	
	◦ 주변지반 부분 침하, 또는 융기현상 발생 여부	
	◦ 창과 문의 뒤틀림과 여닫기 곤란 상태 발생 여부	
	◦ 바닥 포장부위 침하 및 균열 발생 여부	
주요 부재의 구조적 균열과 변형	◦ 슬래브의 상하부에 규칙적인 균열과 변형 (기둥주변 융기, 중앙처짐)등 발생 여부	
	◦ 기둥에 결함 발생 여부(경사균열과 수평 균열, 피복 콘크리트의 터짐과 주철근의 노출)	
	◦ 보에 결함 발생 여부(단부 사인장균열, 중앙부 휨균열)	
◆ 건축물의 내구성 결함 사항		
◦ 각부의 균열, 누수, 백화나 습윤(결로)등의 현상 발생 여부		
◦ 철재 부식 발생 여부		
◆ 기타 결함사항		
◦ 하수관로 및 맨홀의 배수, 청소상태 불량 여부		
◦ 건축물의 기초부위로 빗물 유입 여부		
◦ 담장의 전도 징후 여부		
◦ 외장재(치장벽돌, 모르터 등)와 돌출물(간판, 안테나 등)의 부착상태 이상유무		
◦ 빗물 흥통과 루프드레인의 기능 이상 유무		
◦ 수도, 가스, 전기, 통신선로의 이상 유무		
◦ 배수펌프 작동상태 불량 여부		
◦ 기 타		

【붙임 5】

해빙기 사고발생 즉시 보고서(서식)

사고개요

- 일 시 : '15. . .(요일) : 분(경)
- 위치 : 00시·도 00시·군·구 000읍·면·동(00주택 앞)
 - 시설물 형태 : 공사장, 절개지, 낙석, 축대, 옹벽, 기타 등
- 기상상태 : 맑음, 흐림 등 / 영하·영상 00℃(사고 당시 기온)
- 인명피해 : 명(사망 명, 부상 명)
- 사고원인 : 노후시설, 배부름 현상, 지하수 용출 등

피해규모[인적피해(사망 0명, 부상 0명), 재산피해(00백만원) 등]

[사망, 중·경상, 부상 등 / 재산피해 등]

○ 피해자 인적사항

- 주소 : 성명 :

- 피해규모 : 석축 h=00m, L=00m 중 h=0m, L=0m 부분침하 등

사고내용(6하원칙)

조치사항

※ 사진첨부 : 피해상황 및 조치현황

【붙임 6】

해빙기 안전대책 종합 추진 실적 보고

〈추진기간 : '15. 2. 15. ~ 3. 31.〉

해빙기 사고 종합 현황

- 발생 건수 : 0건, 사상자 0명(사망0, 부상0)
- 사상자 : 0명(사망0, 부상0)
- 사고세부내용: “별지로 작성첨부”

해빙기 안전관리 활동 실적(2.15.~3.31.)

《안전점검》

- 점검 실적(정기, 수시 포함)

구 분	점검시설 수	투입 인력(명)	지적(건수)	조치(건수)
계				
노후 건축물				
노후 축대·옹벽				
급경사지				
건설공사장				
기타				

※ 인명피해위험시설로 지정된 시설은 반드시 포함하고, 미지정 시설물에 대한 점검 실적도 포함하여 작성

※ 조치란에는 응급조치사항(출입통제 등)을 포함한 조치 완료분만 기록

○ 주요 지적사항 및 조치 내용

구 분	주요 지적 사항	조치내용 (응급조치 포함)	비고
노후 건축물			
노후 축대·옹벽			
급경사지			
건설공사장			
기타			

※ 조치 전·후 사전 첨부

《홍보분야》

○ 언론, 인터넷, 전광판 등

구 분	주요 내용	홍보 효과
중앙부처		
광역시·도		
지자체		

《기관 및 기관장 활동 분야》

○ 활동 사항(현장 지도 점검 등)

구 분	주요 내용	비고
중앙부처		
광역시·도		
지자체		

《수범사례, 언론보도 등》

- 해빙기 관련 수범 사례(시·도, 시·군 안전점검반 활동 실적 등)

- 해빙기 관련 언론 보도 내용